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5
----------	------

제출연월일 : 2017. 04.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불명확한 문언 포함 등을 일괄 반영·정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나. 강사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2항)
- 다. 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 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2월 21일 ~ 3월 13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나. 규제개혁관련 협의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권익가족과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따라 적합한 강사” 을 “맞는 관련 분야의 강사” 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사회복지과장
	직위·성명	최 정 호
	팀장	여성가족팀장
	직위·성명	진 일 순
	담당자	김 새 난
	성명·전화번호	(790-566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4조</u>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남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3조</u> ----- ----- ----- ----- ----- -----.</p>
<p>제8조(책무) ① (생략)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u>따라 적합한 강사</u>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생략)</p>	<p>제8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맞는 관련 분야의 강사</u>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센터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제9조(센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제3호에 <u>따른 사회복지법인</u> 4.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u>따른 공익법인</u> 5.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u>」 제2조에 <u>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③·④ (생략)</p>	<p>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p> <p>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p> <p>③·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